

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8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10. 2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생활민원처리 시 무상제공 대상 범위에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정, 65세 이상 1인가구를 추가하고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함에 있어 무상제공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문 제목 변경(안 제4조)

- 제4조 제목을 “운영” → “처리반 운영”으로 변경

나. 생활용품 수리 순회서비스 신설(안 제5조제3항)

- 처리반의 칼갈이 등 생활용품 수리 순회서비스 실시

다.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및 서비스 내용 명시, 자원봉사자 모집

(안 제5조의2)

-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
- 현장서비스의 날에 운영하는 서비스 내용 명시
-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모집

라. 처리반 민원처리시 무상제공 대상 확대(안 제6조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- 65세이상 1인 가구

마. 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원, 무상제공 명시(안 제7조제2항~제4항)

- 처리반 민원처리 및 순회서비스,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서비스에 필요한 예산 지원
- 처리반 순회서비스,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관련 주민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행정서비스 및 체험 결과물 무상 제공 가능
- 현장서비스의 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물품, 비용 지원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 및 관련법규: 따로 붙임
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3조

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

다.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 평가: 일부 반영, 가족복지과-35743(2025. 9. 2.)호

- (개선 의견) 생활민원처리 시 무상 제공 대상으로 한부모가구와 노인 1인가구까지 확대 지원
- (반영내용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조례안 제6조제1호에 명시되어 있음. 65세 이상 1인가구는 반영하여 처리

라. 입법예고: 2025. 8. 25. ~ 2025. 9. 15.(21일간) / 의견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운영)”을 “(처리반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처리반은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칼같이 등 생활용품 수리를 제공하는 순회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현장서비스의 날 운영) ① 구청장은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현장서비스의 날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두, 자전거, 나무도마, 소형가전, 전열교환기 등 생활용품 수리
2. 화분 분갈이, 칼같이, 안경수리 및 세척, 보석 세척, 에어컨 관리 등 주민편익사업
3. 혈압, 치매, 금연, 알콜, 시력, 구강검진, 심폐소생술, 스포츠테이핑 등 건강증진사업
4. 세무, 인권, 자산관리, 산재, 취업, 복지 등 생활민원상담
5. 커피시음, 방향제, 벌레퇴치제, 화장품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
6. 음악공연, 퍼포먼스 등 문화공연
7. 구정 및 시책 홍보사업
8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

③ 구청장은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재료비 등) 처리반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무상으로 처리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3. 「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4. 65세 이상 1인가구
5.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, 제5조의2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 및 제5조의2제2항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서비스 및 체험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- ④ 구청장은 현장서비스의 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운영) ①·②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③ <u>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“현장서비스의 날”을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조(처리반의 임무) ①·②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처리반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삭 제></u></p> <p>제5조(처리반의 임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③ <u>처리반은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칼같이 등 생활용품 수리를 제공하는 순회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조의2(현장서비스의 날 운영) ①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구청장은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<u>현장서비스의 날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구두, 자전거, 나무도마, 소형가전, 전열교환기 등 생활용품 수리</u> 2. <u>화분 분갈이, 칼같이, 안경 및 보석 세척, 애완견 관리 등 주민 편익사업</u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재료비 등) ① <u>처리반의 민원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무상으로 처리한다.</u>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<u>수급자 및 차상위계층</u></p>	<p>3. <u>혈압, 치매, 금연, 알콜, 시력, 구강검진, 심폐소생술, 스포츠테이핑 등 건강증진사업</u></p> <p>4. <u>세무, 인권, 자산관리, 산재, 취업, 복지 등 생활민원상담</u></p> <p>5. <u>커피시음, 방향제, 벌레퇴치제, 화장품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</u></p> <p>6. <u>음악공연, 퍼포먼스 등 문화공연</u></p> <p>7. <u>구청 및 시책 홍보사업</u></p> <p>8. <u>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</u></p> <p>③ <u>구청장은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조(재료비 등) <u>처리반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무상으로 처리한다.</u>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<u>수급자 및 차상위계층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2. <u>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</u></p> <p>② <u>구청장은 “현장서비스의 날”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구청장은 제4조제3항과 제5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7조(장비 및 예산의 확보)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2. 「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<u>국가유공자</u></p> <p>3. 「<u>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</u>」에 따른 <u>다자녀 가정</u></p> <p>4. <u>65세 이상 1인가구</u></p> <p>5. <u>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</u></p> <p>제7조(장비 및 예산의 확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, 제5조의2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구청장은 제5조제3항 및 제5조의2제2항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서비스 및 체험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구청장은 현장서비스의 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근거 및 관련법규

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예우의 기본이념)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.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

□ 「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5. "다자녀 가정"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 또는 입양으로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

□ 「노인복지법」

제26조(경로우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·능원·박물관·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
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
따른 예산은 이미 조례가 시행중에 있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함.

3. 작성자

- 소 속: 자치행정과
- 직 급: 지방행정서기
- 성 명: 김동우
- 연락처: (052)290-3852